

이에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,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,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“소방기술민원센터”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제4조의2 신설).

나.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,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(제27조의2 신설)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1년 1월 5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

●법률 제17835호
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제24호의3 중 “제26조의2제2항”을 “제26조의2제1항 후단”으로 한다.

법률 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.

제26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, 경영능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·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1항제13호의3 중 “제26조의2제2항”을 “제26조의2제1항 후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「주택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 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·공사 감리 용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능력, 경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·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, 민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.

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는 갑·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1년 1월 5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균

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장 전 해 철

●법률 제17836호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전단 중 “위임할 수 있으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”을 “위임하거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, 일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